

임상전문가패널(CPEP) 운영규정

의료수가실 상대가치개발부

전부개정 2021. 10. 29. 규정 제441호

개정 2023. 3. 21. 규정 제47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규정」 제13조에 의한 임상전문가패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상대가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·약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의사, 치과 의사, 한의사, 약사 및 관련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전문가패널(CPEP: Clinical Practice Expert Panel, 이하 “전문가패널”이라 한다)을 2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패널로 구성된 임상전문가분과패널(이하 “분과패널”이라 한다)과 임상전문가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분과패널은 의과, 치과, 한의과, 약국 등 진료분야 및 진료과목에 따라 분류하며, 세부적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분과패널 성격에 따라 행위유형(수술, 처치, 기능, 검체, 영상)별(이하 ‘행위유형별 분과패널’이라 한다.)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유형을 추가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④ 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의 학회별 각 1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로 구성하되 진료과목별 학회인원은 사안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적인 구성은 별표 2와 같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, 원장은 상대가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 전문가패널이 아닌 전문가를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소위원회 구성 등) ① 제2조제5항에 따라 직접비용 근거 자료의 불균형 개선 등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로서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와 동료평가검증위원회를 둔다.

②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조정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중 호선하되 제2조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패널 이외의 위원을 포함하여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적인 구성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③ 동료평가검증위원회 위원은 17명 이내로 구성하고, 조정위원회가 전문가패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세부적인 구성은 별표 4와 같다.<개정 2023. 3. 21.>

④ 조정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동료평가검증위원회 위원장에게 동료 평가검증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적인 구성은 별표 4와 또한 같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분과패널과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분과패널: 각 분과별 대상 행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(인건비, 장비비, 재료비)별 근거자료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직접 진료비용(자원의 양) 상대가치 근거자료의 구축·보완
2. 조정위원회: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검토,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 관련 근거자료 등 전반에 대한 검증·조정

제5조(소위원회의 기능)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1.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: 직접 진료비용 근거자료 구축 개선 방안 검토 및 유형별 행위 유형별 분과패널 이견 사항 조정 등 표준화(안) 및 가이드 라인 마련
2. 동료평가검증위원회: 행위 유형별 직접비용 근거자료의 표준화 및 의료행위·진료과목 간 균형성 조정 등 실무검토·조정

제6조(위원의 임기 등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추천 단체장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패널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임·해촉) 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신체 등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2. 추천단체장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8조(위원장 등) ① 행위유형별 분과패널 및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각 1명을 두고, 별표 1에 대한 각 분과패널에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. 다만, 원장이 제2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구성·운영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정해진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3. 3. 21.>

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·부위원장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④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.

⑤ 동료평가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장으로 한다. 다만,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대행자로 하여금 간사업무를 대행하게 한다.<개정 2023. 3. 21.>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,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,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「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규정」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이 담당한다.

- ② 위원회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 의결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·수신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 의결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회의자료 등의 작성·보관)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회의 자료 등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안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2조(대리참석) ① 전문가패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질병,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
2.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② 전문가패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비밀의 유지)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결과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,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②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논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
5. 위원이 해당 안전의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논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해 심의·의결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, 스스로 당해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5조(관계인의 출석) 위원회는 안전을 원활하게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안전과 관련이 있는 자(이하 “관계인”이라 한다)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패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보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전문가패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3. 3. 21.>

임상전문가분과패널 세부 구성(제2조제3항 관련)

연번	분과명	인원수(명)	구성인력
1	내과/가정의학과/응급의학과	24	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
2	신경과	6	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
3	정신건강의학과	6	의사, 간호사, 임상심리사
4	외과	15	의사, 간호사
5	정형외과	14	의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
6	신경외과	14	의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
7	심장혈관흉부외과	8	의사, 간호사
8	성형외과	5	의사, 간호사
9	마취통증의학과	6	의사, 간호사
10	산부인과	10	의사, 간호사
11	소아청소년과	4	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
12	안과	8	의사, 간호사
13	이비인후과	10	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
14	피부과	5	의사, 간호사
15	비뇨의학과	7	의사, 간호사
16	영상의학과	11	의사, 간호사, 방사선사
17	방사선종양학과	6	의사, 방사선사, 의학물리사
18	병리과	6	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
19	진단검사의학과	15	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
20	재활의학과	9	의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
21	핵의학과	6	의사, 간호사, 방사선사
22	치과	13	치과의사, 간호사, 치과위생사
23	한의원	7	한의원사, 간호사
24	약국	5	약사
계		220	

주 1. 24개 분과: 의과 21개 분과, 치과·한의원·약국 각 1개 분과

2. 각 분과는 해당과 의사(세부 진료과목 관련 임상인력 포함)로 구성되며, 각 분과 내 인원수는 타 분과와 상호 협의 하에 일부 조정 가능

[별표 2] <개정 2023. 3. 21.>

임상전문가조정위원회 세부 구성(제2조제4항 관련)

구분	구성인력	인원수(명)
(의과) 의사	.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의 학회별 각 1명 . 대한의사협회 3명	26
간호사	내과·외과·기타 분야 각 1명	3
기 타	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 각 1명	3
계		32

- 주. 1. 진료과 중 행위가 배정되지 않은 결핵과, 예방의학과 및 작업환경의학과는 제외
 2. 한 개의 분과패널에만 소속되어 있는 임상심리사 등은 해당 분과의 조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직종을 대신하여 의견 조정역할을 함
 3. (의과) 의사의 경우, 진료과목의 학회별 구성 인원과 대한의사협회의 구성 인원의 일부 상호 조정 가능

[별표 3] <개정 2023. 3. 21.>

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 세부 구성(제3조제2항 관련)

구성인력	인원수(명)
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장	1
동료평가검증위원회 대표	1
행위 유형별 분과패널 대표	행위 유형수에 따라 변동
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추천 전문가	2
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전문가	2
계	10

주.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행위 유형별 분과패널 대표를 지정하며, 행위 유형 성격에 따라 동일한 분과패널 대표 지정 가능
 (예: 처치 유형 분과패널 대표, 기능 유형 분과패널 대표 각각 1명 → 처치·기능 유형 분과패널 대표 1명)

[별표 4]<개정 2023. 3. 21.>

동료평가검증위원회 세부 구성(제3조제3항 관련)

구분	인원수(명)	비고
내과 분야	3	고정
외과 분야	3	
기타 분야	3	
행위 유형별	8 (행위 유형별 2)	수술, 처치·기능, 검체, 영상 유형(4개 유형)별 변경

주. 행위 유형별 구성의 경우, 공정성 유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내과·외과·기타 분야 각 3명씩 9명은 매 회의 시 고정 참석하고,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행위 유형별 2명은 해당 유형의 회의 시 마다 변경하여 참석하도록 구성

임상전문가패널 서면 의결서(제10조제3항 관련)

다음의 안건을 「임상전문가패널 운영규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
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자 하오니, 동의여부를 아래에 표기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회의명: 제 차 () 위원회

2. 회의일시:
(의결기한)

3. 의결사유:

4.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(논의항목)	의결내용		사유 또는 의견
	찬성(✓)	반대(✓)	

20

()위원회 위원 (인 또는 서명)

()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청 럽 서 약 서 (제13조제2항 관련)

서 약 인 인적사항	성 명			
	소 속		직 위 (직 급)	

상기 본인은 임상전문가패널로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며, 안전 논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

1. 본인은 안전 논의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.
2. 직무수행 중 작성한 각종서류 및 전산자료, PC 등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반출하지 않겠습니다.
3. 본인은 재임기간 동안 안전 논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, 직무관련 연구용역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.

20
서 약 인 (서명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